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2년 9월 16일
행 정 재 경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9월 6일, 정재동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6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2년 9월 16일)
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정재동 의원)

가. 개정이유

○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공무직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○ 공무직의 채용원칙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
○ 공무직의 근로조건의 보장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

○ 공무직의 복무의무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)

○ 공무직의 정년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1조)

○ 공무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2조)

○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3조)

○ 공무직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5조)

○ 공무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공무직의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임.

○ 공무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·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이라고도 함.

○ 공무원과 달리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공개채용은 서류와 면접심사로 이뤄지며 공무원에 비해 업무상 책임과 권한이 크지 않은 편이라는 특징이 있음

○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보수 등은 단체협약에 따르고 있으며, 우리구는 공무직에 대한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」을 운영하고 있음

○ 국회 입법 현황은 진선미 의원이 2021년 1월 11일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·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합리적·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절차·근무조건·복무기준 등을 법률로 정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한 「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(의안번호-2107296)」을 발의하여, 2021년 5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중에 있음

○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이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시행의무를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등 공무직 처우개선에 관한 안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격상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사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는 있으나,

○ 구청장 훈령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」과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반해서는 안되므로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,

○ 본 조례안의 상당부분이 구청장 훈령과 중첩되는 바, 조례 제정시 근로환경의 변화에 적시 대응하는데 있어 이전보다 어려울 수도 있는 단점도 존재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